

ISBP 745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과 사례분석

A Study on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전순환(Soon-Hwan Jeon)

중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개정내용	참고문헌
III.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심사기준	ABSTRACT
IV.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사례분석	

국문초록

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행, 화환신용장통일규칙, 서류심사, 원산지증명서

I. 서론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UCP 500을 준거하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645)를 제정한 후, UCP 600의 개정과 기타 신용장의 서류심사관행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1일에 제1차 개정(ISBP 681)을 하였고, 2013년에 다시 제2차로 개정(ISBP 745)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ISBP 745는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로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상업송장,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선화증권, 용선계약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 도로·철도 또는 내륙수운송서류), 보험서류와 같은 기본서류,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수익자증명서, 기타 증명서와 같은 기타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장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원이나 실무담당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ISBP 745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적서류 중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조항은 L항으로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와 송장의 그것과의 일치성에 관한 규정은 L1항에, 특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시에 관한 규정은 L2항에,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에 관한 규정은 L3항에,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에 관한 규정은 L4항에, 원산지증명서의 수화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L5항에, 원산지증명서의 송화인 또는 수출업자에 관한 규정은 L6항에, 비서류조건으로서의 원산지의 요구에 관한 규정은 L7항에, 상이한 송장번호 등이 표시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L8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ISBP 745 L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상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서류로 부상하였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해당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¹⁾로서, 제네바에서 개최된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1923년부터 도입되어 정규화된 서류이며, 통관 또는 무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ISBP 745 L항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개정내용을 살펴본 다음, ISBP 745 L항에 명기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을 분석하고, 이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실제로 신용장의 서류심사의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무역실무담당자와 은행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장의 서류심사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전순환(2013), 『무역결제론』, 한울출판사, p.693.

2) ICC(2006),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Origin Guidelines』, ICC Publication No. 670, ICC Services Publications Department, pp.5-6.

II.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개정내용

1. 기본 요건과 그 기능의 이행

1) L1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1항은 ISBP 681 제181항이 개정된 것으로서, 표제가 “Basic requirement”에서 “Basic requirement and fulfilling its function”로 변경되고, 규정 중에서 “A requirement for a certificate of origin”가 “When a credit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is”로, “dated document that certifies to the origin of the goods”가 “that appears to relate to the invoiced goods and certifies their origin”로 변경되었다. 즉,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dated(일자가 기입되고)”가 “that appears to relate to the invoiced goods(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이라는 문언이다.

2) L2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2항은 ISBP 68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조항으로서, 신용장이 특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때 그 특정 양식의 서류만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조항, 즉 “When a credit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specific form of certificate of origin such as a GSP Form A, only a document in that specific form is to be presented.”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

1) L3 a)와 b)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3항은 ISBP 681 제182항이 개정된 것으로서, ISBP 제182항 제1문이 ISBP 745 L3 a)항으로 개정되고, 이 규정 중에서 “must be”가 “is to be”로, “the party”가 “the entity”로 내용상의 의미에는 변함없이 변경된 반면, “When a credit does not indicate the name of an issuer, any entity may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신용장이 발행인의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모든 당사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이라는 내용의 L3 b)항이 신설되었다.

2) L3 c)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3항은 ISBP 681 제182항이 개정된 것으로서, ISBP 제182항 제2문이 ISBP 745 L3 c i)항으로 개정되고, 이 규정 중에서 “However, if a credit requires a certificate of origin to be issued”가 “When a credit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로, “a document issued by a chamber of commerce will be deemed acceptable”가 “this condition will also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Chamber of Commerce or the like, such as, but not limited to, Chamber of Industry, Association of Industry, Economic Chamber, Customs Authorities and Department of Trade or the like”로, “provided it clearly identifies”가 “provided it indicates”로 변경되었다. 또한, ISBP 제182항 제3문이 ISBP 745 L3 c ii)항으로 개정되었다. 즉, “If a credit does not state who is to issue the certificate, then a document issued by any party, including the beneficiary, is acceptable”이라는 규정이 “When a credit requires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Chamber of Commerce, this condition will also be satisfied by the presenta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Chamber of Industry, Association of Industry, Economic Chamber, Customs Authorities and Department of Trade or the like”라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3.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1) L4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4항은 ISBP 681 제183항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 규정 중에서 “The certificate of origin must”가 “A certificate of origin is to”로, “The goods description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shown in general terms not in conflict with that stated in the credit or”가 “for example, by: a. a goods description that corresponds to that in the credit or a description shown in general terms not in conflict with the goods description in the credit; or”로, “by any other reference indicating a relation to the goods in a required document”가 “b. referring to a goods description appearing in another stipulated document or in a document that is attached to, and forming an integral par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로 변경되었다.

2) L5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5항은 ISBP 681 제184항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 규정 중에서 “if shown, must not be in conflict”가 “when shown, is not to conflict”로, “if”가 “when”으로, “to order of the issuing bank”가 “to order of issuing bank”, “to order of nominated bank (or negotiating bank)”로, “the certificate of origin may show the applicant of the credit, or another party named therein, as consignee. If...”가 “a certificate of origin may show the consignee as any entity named in the credit except the beneficiary. When...”로, “the name of the first beneficiary as consignee would also be acceptable.”가 “the first beneficiary may be stated to be the consignee.”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경은 없다.

3) L6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6항은 ISBP 681 제185항이 개정된 것으로서, 이 규정 중에서 “show the consignor or exporter as a party”가 “indicate as the consignor or exporter an entity”로, “on the transport document”가 “as shown on any other stipulated document”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상의 실질적인 변경은 없다.

4) L7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7항은 신설된 규정으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요구없이 원산지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비서류조건의 경우의 수리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5) L8항의 개정내용

ISBP 745 L8항은 신설된 규정으로서, “상이한 송장번호와 일자, 선적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수리요건”에 관한 규정이다.

Ⅲ.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의 심사기준

1. 원산지증명서의 기본 요건 및 그 기능의 이행

1) 송장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의 일치성

ISBP 745 L1항에서는 신용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서류의 요건은 ① “송장에 기재된 물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것”, ②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고 있을 것”과 ③ “서명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3가지 요건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로 본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 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에는 이러한 항목을 기재하는 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³⁾

2) 특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시

ISBP 745 L2항에서는 신용장이 특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그 특정 양식의 서류만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GSP A양식의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다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된다면 이는 불일치한 서류로 본다.

2.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

1) 원칙적인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

ISBP 745 L3 a) 및 b)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을 명시하고 있는 때에는 그 명기된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되어야 하지만, 신용장에서 발행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때에는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정인에 의한 발행을 요구한 경우의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

ISBP 745 L3 c)항에서는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자,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가 표시된다면 상업회의소 또는 이와

3) 飯田 勝人(2003), 「ISBP(國際標準銀行實務)の解説-荷爲替信用狀に基づく書類の點檢-」, (株)東京リサ-チインタ-ナショナル.

유사한 기관(예를 들면, 공업회의소, 공업협회, 경제회의소, 관세당국 및 무역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하지만 이들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으며, 신용장에서 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업회의소, 공업협회, 경제회의소, 관세당국 및 무역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발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고,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에 의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 협정(FTA)에 의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발행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장(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다.⁴⁾

3.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1)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

ISBP 745 L4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로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는 ①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거나 또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충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된 명세이어야 하거나, 또는 ② 다른 명시된 서류에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표시됨과 동시에 그 물품명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하는 물품명세를 표시함으로써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원산지증명서는 당연히 수리될 수 있지만,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물품명세를 표시함으로써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이 원산지증명서는 수리된다. 이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명기된 경우 신용장상의 이들 명세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UCP 600 제14조 e항에 따른 것이다.

4) 전순환(2013), 『대외무역법』 제12개정판, 한울출판사, p.366;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 제4항 및 제10항;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제1-2조

또한, 명시된 다른 서류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어떤 서류가 물품명세를 표시 하면서 그 물품명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이 원산지 증명서는 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수화인정보

ISBP 745 L5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 정보(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정보는 상호 상충되어서는 안되지만, 신용장에서 “지시식(to order)”, “송화인의 지시식(to order of shipper)”, “발행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the issuing bank)”, “지정은행(또는 매입 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nominated bank (or negotiating bank))” 또는 “발행은행에게 탁송하였음(consigned to the issuing bank)”을 표시한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란에는 수익자 이외의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당사자로서 수화인을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란에는 제1수익자(the first beneficiary)가 수화인으로 명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된 UCP 600 제38조 g항 제3문과 제4문에서는 신용장발행의 퇴인의 정의는 제1수익자의 정의로 대체될 수 있으며, 발행의퇴인의 정의가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에 표시되도록 신용장에 의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양도된 신용장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ISBP L5항 제3문에서는 신용장이 양도된 때에는, 제1수익자는 수화인으로 명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산지증명서의 송화인 또는 수출업자

ISBP 745 L6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송화인(consignor) 또는 수출업자(exporter)란에는 신용장의 수익자 또는 기타 모든 서류상의 송화인(shipper)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표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ISBP 745 L6항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상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즉, 신용장의 수익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에는 제조업자가 송화인으로서 기재되지만, 기타 모든 서류상에는 제조업자가 아닌 신용장의 수익자가 송화인으로서 기재된다. 따라서,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송화인(또는 수출업자)과 기타 모든 서류상의 송화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4) 비서류조건으로서의 원산지 요구

ISBP 745 L7항에서는 “예를 들면 신용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물품의 원산지: 독일’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위한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서류상에 표시된 모든 원산지는 명기된 원산지(독일)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원산지(독일)와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는 자료의 상충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UCP 600 제14조 h항에서는 “신용장이 어떤 조건(conditions)과의 일치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명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건(conditions)이란 서류조건(documentary terms)이 아니라 비서류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에 관한 조건으로서, 비서류조건이란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① 수익자가 입수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조건, ② 발행자가 알 수 없는 명세를 포함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조건, ③ 서류의 문면으로부터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 ④ 기타의 서류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유효기일, 선적기일, 서류의 제시기일 이외의 시간적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이와 같이 UCP 600 제14조 h항에서는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조건(Conditions)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류거래라고 하는 신용장의 원칙에 입각한 신용장 실무를 현저하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에 관한 조건(terms)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의 명시 없이 조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용장조건은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⁶⁾

결론적으로 UCP 600 제14조 h항과 ISBP 745 L7항은 비서류조건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물품의 원산지: 독일’과 같이 요구하고 있는 비서류조건에 대하여 UCP 600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ISBP 745에서는 명시된 서류상에 표시된 모든 원산지는 명기된 원산지(독일)와 상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원산지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원산지(독일)와 다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면 이

5) ICC,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ICC Publication No. 416, ICC Publishing S.A.

6) 전순환(2012), 『회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한울출판사, p.138.

는 자료의 상충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원산지의 표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존의 개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특정국의 원산지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모든 서류에도 명기될 수 있으며, 이렇게 명기된 원산지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산지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ISBP의 규정이 더 진일보하고 설득력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5) 상이한 송장번호 등이 표시된 원산지증명서

ISBP 745 L8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된 수출업자 또는 송화인이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는 상이한 송장번호, 송장일자 등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최초 수출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에게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상이한 송장번호와 송장일자 등의 내용을 수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출업자가 최종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계무역업자인 수익자에게 송부한다. 따라서, 최초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업자(송화인)란에는 최초의 수출업자가 명기되고 송장번호와 일자란에는 최초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송장번호와 송장발행일자가 명기된다.

이와 같이 중계무역의 경우, 수익자는 최초의 수출업자로부터 송부받은 원산지증명서와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을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을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업자(송화인)는 신용장의 수익자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원산지증명서상의 송장번호, 송장일자 등도 수익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상의 송장번호, 송장일자 등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계무역의 특수한 관행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상에 표시된 수출업자 또는 송화인이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가 발행한 상업송장과 다른 송장번호나 송장일자 등이 원산지증명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고 ISBP 745 L8항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IV.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에 따른 사례분석

1. 원산지증명서의 기본요건에 관한 사례분석

신용장거래하에서, 수익자는 “모든 물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all the products were produced in China)”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과 함께, “명기된 물품이 중국으로부터 제조되었다(the goods described above are made from China)”고 하는 당국의 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은행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행은행은 “produced in”과 “made from”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였다.

이 사례에는 ISBP 745 L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이 사례에서 수익자가 발행은행에 제시한 원산지증명서는 ISBP 745 L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송장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이 있을 것’,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고 있을 것’과 ‘서명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요건이 충족된 원산지증명서로서, 물품의 명세가 정확하고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고 기재됨과 동시에 서명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될 수 있다.

따라서, “produced in”과 “made from”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한 발행은행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 선화증권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를 기재한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분석

신용장은 “이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는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있어야 하며, 그 발행일자는 신용장의 발행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서는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의 발행일자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선화증권의 선적일자보다는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매입은행에 제시되었을 때, 매입은행은 원산지증명서가 선화증권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리거절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UCP 600 제14조 i항의 “서류는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가 기재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용장에서 신용장의 발행일자보다 빠른 일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와 선화증권 등의 모든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용장의 발행일자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자가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ICC사례를 보면, 신용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상에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과 함께 서명이 행해졌으나 그 발행일자가 선적일 이후로 기입되어 있었다라도, 그 원산지증명서는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검사와 같은 물리적인 행위를 전제하지 않으며,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원산지”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발행일자가 선적일 이후로 기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자가 선적일 이전이거나 이후이거나를 불문하고 수리될 수 있다.⁷⁾

3. 수익자발행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경우의 사례분석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하에서, 수출국의 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매입은행에 제시되었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한 발행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거절하였고,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라도 그 증명서상에 수익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아닌 상업회의소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ISBP 745 L3 c)항에 의하면 “신용장이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 조건은 또한 상업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예를 들면 공업회의소, 공업협회, 경제회의소, 관세당국 및 무역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 다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자,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신용장이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라도, 수익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매입은행의 수리거절은 부당하다.

7) Collyer, Gary & Katz. Ron(2002),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ICC Publishing SA, p.164.

4. 물품명세가 상업송장과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분석

제3국에 의하여 확인된 신용장하에서, 확인은행에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지만,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는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충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그 상업송장에 따른 물품명세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확인은행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가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절하였다.

이 사례는 UCP 600 제14조 e항과 ISBP 745 L4 a)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UCP 600 제14조 e항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명기된 경우 신용장상의 이들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지만, 상업송장이 아닌 기타 서류는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상충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ISBP 745 L4 a)항의 “원산지증명서는 예를 들면, 신용장의 그것에 일치하는 물품명세 또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충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된 명세에 의하여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거나 또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충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되어 있고 그 명세가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수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상충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의 번호를 언급하면서 그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확인은행의 수리거절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5. 원산지증명서의 수화인정보에 관한 사례분석

신용장이 “상업회의소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chamber of commerce)”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 중에서 선화증권은 발행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것이었고, 원산지증명서는 수화인으로서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예: XYZ)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매입은행은 신용장이 발행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신용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는 수화인으로서 발행의뢰인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신용장에서 명기된 기타 모든 당사자의 명의를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수화인이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수화인이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아니거나 또는 신용장에서 명기된 기타 모든 당사자의 명의를 가진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된 경우에는 매입은행의 주장대로 불일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ISBP 745 L5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 정보(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정보는 상호 상충되어서는 안되지만, 신용장에서 ‘지시식(to order)’, ‘송화인의 지시식(to order of shipper)’, ‘발행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the issuing bank)’, ‘지정은행(또는 매입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nominated bank (or negotiating bank))’ 또는 ‘발행은행에게 탁송하였음(consigned to the issuing bank)’을 표시한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란에는 수익자 이외의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당사자로서 수화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ISBP 745 L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장이 발행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선화증권을 요구한 때에는 원산지증명서와 선화증권의 수화인정보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란에는 수익자 이외의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당사자로서 수화인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수화인으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서가 선화증권의 수화인과 상충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수리를 거절한 상기의 매입은행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6. 수익자가 아닌 송화인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분석

신용장에서 제시된 모든 서류에는 수출업자(또는 송화인)의 이름과 주소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산지증명서에는 신용장의 수익자의 이름과 주소가 아닌 다른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매입은행은 원산지증명서가 신용장의 수익자의 이름과 주소가 아닌 다른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리거절하였다.

이 사례에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상황을 반영한 ISBP 745 L6항이 적용될 수 있다. ISBP 745 L6항의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의 수익자 이외의 당사자 또는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표시된 대로 송화인 이외의 당사자를 송화인 또는 수출업자로서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수리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의 수리거절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V. 결론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SBP 745는 2013년 4월에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어 있으며, 환어음과 환어음에 첨부되는 거의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진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ISBP 745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와 송장의 그것과의 일치성(L1항), 특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시(L2항),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인(L3항),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L4항), 원산지증명서의 수화인정보(L5항), 원산지증명서의 송화인 또는 수출업자(L6항), 비서류조건으로서의 원산지의 요구(L7항), 상이한 송장번호 등이 표시된 원산지증명서(L8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총 8개항에 걸쳐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ISBP 745 L항은 UCP 600에 근거하여 신용장거래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을 반영하여 상기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8개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ISBP 745 L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살펴본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물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all the products were produced in China)”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과 함께, “명기된 물품이 중국으로부터 제조되었다(the goods described above are made from China)”고 하는 당국의 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produced in”과 “made from”이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거절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으로서 ‘송장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이 있을 것’,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고 있을 것’과 ‘서명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규정한 ISBP 745 L1항에 따라 물품의 명세가 정확하고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고 기재됨과 동시에 서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된 원산지증명서로서 수리될 수 있다.

둘째, “이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는 발행일자를 기재하고 있어야 하며, 그 발행일자는 신용장의 발행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서는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는 신용장 하에서, 제시된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의 발행일자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선화증권의 선적일자보다는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서류는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가 기재될 수 있다”는 UCP 600 제 14조 i항의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와 선화증권 등의 모든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용장의 발행일자 이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으며, 원산

지증명서의 일자가 선화증권의 발행일자보다 이전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수익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한 신용장하에서 수출국의 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ISBP 745 L3 c)항에 따라 신용장에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상에 수익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아닌 상업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수리될 수 있다.

넷째, 제시된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는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상충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그 상업송장에 따른 물품명세라고 언급하고 있었으며, 제시된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명기된 경우 신용장상의 이들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는 UCP 600 제14조 e항과 “원산지증명서는 예를 들면, 신용장의 그것에 일치하는 물품명세 또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상충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표시된 명세에 의하여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ISBP 745 L4 a)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명세가 신용장 및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상충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재되어 있고 상업송장의 번호를 언급하면서 그 상업송장에 기입된 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상업회의소에 의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chamber of commerce)”를 요구하는 신용장하에서, 발행은행의 지시식으로 작성된 선화증권과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를 수화인으로 표시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 정보(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정보는 상호 상충되어서는 안되지만, 신용장에서 ‘지시식(to order)’, ‘송화인의 지시식(to order of shipper)’, ‘발행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the issuing bank)’, ‘지정은행(또는 매입은행)의 지시식(to order of nominated bank (or negotiating bank))’ 또는 ‘발행은행에게 탁송하였음(consigned to the issuing bank)’을 표시한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수화인란에는 수익자 이외의 신용장에 지정된 모든 당사자로서 수화인을 표시할 수 있다”고 ISBP 745 L5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아닌 다른 당사자가 수화인으로 표시된 원산지증명서가 선화증권의 수화인과 상충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모든 서류에는 수출업자(또는 송화인)의 이름과 주소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대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산지증명서에는 신용장의 수익자의 이름과 주소가 아닌 다른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신용장의 수익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선적하는 상황을 반영한 “원산지증명서는 신용장의 수익자 이외의 당사자 또는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표시된 대로 송화인 이외의 당사자를 송화인 또는 수출업자로서 표시할 수 있다”는 ISBP 745 L6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의 수익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UCP 600이나 ISBP 745에 규정된 심사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작성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심사원칙의 적용이 어려운 형태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신용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에 관련된 세계의 모든 은행과 신용장 사용자가 ISBP 745를 활용할 것이므로⁸⁾ 신용장거래의 원산지증명서의 일치성의 판단여부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역실무가들이 UCP 600의 규정과 ISBP 745의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ICC도 신용장업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ISBP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박세운(2013.6), “ISBP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p.148.

전순환(2013), 「무역결제론」, 한울출판사, p.693.

전순환(2012),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 한울출판사, p.138.

전순환(2013), 「대외무역법」, 제12개정판, 한울출판사, p.366

대외무역법시행령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8) 박세운(2013.6), “ISBP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 제9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p.148.

飯田 勝人(2003). 「ISBP(國際標準銀行實務)の解説-荷爲替信用狀に基づく書類の點檢-」, (株)東京
リサーチインターナショナル.

Collyer, Gary & Katz. Ron(2002).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lication No. 632. ICC Publishing SA, p.164.

ICC(2003).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 No.645. ICC Publishing SA.

ICC(2013).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 No.745. ICC Publishing SA.

ICC(2007). 「*Uniform Customs and Pri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Pub. No.600. ICC
Publishing SA.

ICC(1993). 「*Uniform Customs and Pri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Pub. No.500. ICC
Publishing SA

ICC, 「Standard Documentary Credit Forms」, ICC Publication No. 416, ICC Publishing S.A..

ICC(2006),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Origin Guidelines」, ICC Publication No. 670, ICC Services
Publications Department, pp.5-6.

ABSTRACT

A Study on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Soon-Hwan Jeon

ICC Banking Commission have approved the new version of ISBP for UCP 600(Publication 745) on April 17, 2013. This is called the ISBP 745.

This revised version of ISBP includes a lot of shipping documents including bill of exchange. These shipping documents stated in the ISBP 745, especially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the document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customs formalities in FTA era.

Particularly, practitioners such as bankers, buyers and sellers, lawyers, freight forwarders and carriers in import and export transactions have to know the UCP 600 and ISBP 745 (2013) thoroughly in order to avoid the disputes due to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duce the disputes occurred in the credit transaction by providing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case stud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ISBP 745.

Key Words : ISBP, ISBP 745, UCP 600, Letter of Gredit, Examination of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